



2024년 1월
제258회 임시회

김해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 해 시
(노인복지과)

김해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4년 1월 일
제 출 자 : 김 해 시 장

1. 제안이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고독사에 대한 정의를 ‘홀로 사는 사람의 죽음’에서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의 죽음’으로 개정함에 따라 조례에 이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을 「김해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로 변경(안 제명)
- 고독사의 정의 변경에 따라 “1인 가구” 등의 내용을 삭제하고 조례의 내용을 간결하게 다듬음(안 제1조부터 제9조까지)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붙임)
- 예산관련 : 별도조치 필요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 부서협의
 - 부패영향평가(감사관) : 원안동의
 - 규제사전심사(법무담당관) : 해당없음
 - 성별영향평가(여성가족과) : 개선사항 없음
- 입법예고 : 2023. 12. 14. ~ 2024. 1. 3.(접수의견 없음)
- 조례·규칙심의회 : 2024. 1. 8.

김해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해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김해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지역사회안전망을 마련하고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김해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에 적용한다.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고독사 발생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중년·노인 등에 대한 생애 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와의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 경제, 사회적 관계 등이 취약한 사회적 고립가구 구성원
2.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이·통·반장,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3.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예방사업) ① 시장은 제7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등 안전장치의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이웃만들기, 주민모임 등 사회적 관계망의 형성 지원

- 6. IOT(사물인터넷)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 7.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의 발굴·연계 서비스
 - 8. 그 밖에 고독사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해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중 “「김해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를 “「김해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로 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3.6.12. 이전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김해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김해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조(예방사업)에 필요한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김해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 복지국 노인복지과장 박 은 숙(☎ 330-3290)

김해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 2019.0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외·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 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외·단절된 1인 가구를 위하여 지역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김해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50세 이상의 1인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발생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중년·노인 등에 대한 생애 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소외·단절된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 시 1인 가구의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시켜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50세 이상의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 2.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이·통·반장,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예방사업) ① 시장은 제7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 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 3. 가스·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등 안전 확인을 위한 장치 설치 지원
- 4. 방문간호서비스
- 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이웃만들기, 주민모임 운영
- 6. IOT(사물인터넷)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 7.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 8.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1383호 2019.2.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